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은 언제까지 정할 수 있나

지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해 두는 것, 필요는 그 뒤에 생긴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선을 지정 절차의 부담을 덜어 낸 조치로 보되, 제도의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지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 두도록 안내돼 왔고, 대리청구가 필요해지는 때는 그 뒤다. 적용도 2026년 7월 1일 이후의 신규 계약부터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30일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발표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 1국 생명보험상품팀
적용 시점	2026년 7월 1일 신규 계약부터	기존 계약자에게는 안내 예정
신설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적용 대상	치매보험 → 암·뇌·심혈관 보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
치매보험 지정률	26.0% → 23.1%	2021년 → 2026년 상반기, 언론 보도
치매 유병률	9.50%(2016) → 9.25%(2023)	0.25%p 감소,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발표 자료는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적었다. 기존의 기명 대리청구인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지정 시 성명 등 기본정보만 제출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자에게는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니라 계약자 계좌로 지급된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청구할 수 없게 된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해 두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19일 안내자료에서 이 제도를 설명했다. 치매나 중병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는 보험 가입 시 또는 질병 발생

이전에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대리청구가 필요해지는 때와 지정하도록 안내된 때가 어긋난다. 제도가 작동하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때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

종전에 지정이 번거로웠던 이유는 개인정보 동의였다. 대리청구인이 될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 사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수집·이용의 근거로 정한다. 같은 법 제 22 조 제 1 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도록 정한다.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제 24 조의 2 제 1 항은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만 처리하도록 제한한다.

두 규칙 모두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남의 정보가 함부로 모이지 않도록 절차를 요구하고,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금 청구권을 지키려 한다. 그런데 앞의 절차가 뒤의 목적을 늦췄다. 대리청구인이 될 사람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무기명 방식은 지정 시점에 특정인을 적지 않는다. 발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하다고만 적었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구조상으로는 지정 단계에서 수집할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구조가 2019 년에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9 년 7 월 2 일 치매보험 약관 개선을 발표하면서, 개선된 상품이 2019 년 10 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보험업법 제 127 조의 2 제 1 항은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권고를 정한다.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같은 법 제 128 조의 3 과 제 129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독당국이 약관을 통해 제도를 바꾸면, 이미 맺은 계약과 새로 맺는 계약의 취급이 갈린다. 이번에도 적용은 2026 년 7 월 1 일 이후의 신규 계약부터이고, 이미 치매보험이나 암보험에 든 사람에게에는 안내가 예정돼 있을 뿐이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치매보험이나 중증 질병 보험에 들어 두고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이다. 보도된 지정률 23.1%를 그대로 두면 치매보험 계약 100 건 가운데 76.9 건에는 대신 청구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025 년 3 월 12 일 2023 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 년 9.50%였던 치매 유병률은 2023 년 조사에서 0.25%p 낮아진 9.25%다. 같은 자료는 2025 년 유병률을 9.17%, 환자 수를 97 만 명으로 예측했다.

미리 지정해 두지 않은 채 의사능력을 잃으면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후견 절차다. 민법 제 9 조 제 1 항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정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고,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제 1 항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한정후견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제 938 조 제 1 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 년 6 월 5 일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계기가 없다. 진단을 받은 뒤에 확인하면 안내된 시점을 이미 지난 뒤다. 보건복지부가 2026 년 7 월 8 일 발표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현황이 그다음 절차를 보여준다. 2026 년 7 월 3 일까지 신청 118 건 가운데 계약 체결은 4 건이고, 14 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실제로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6 월 30 일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 기존 계약자에게는 안내가 예정돼 있을 뿐이다. 안내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이미 맺은 계약에 새 방식이 적용되는지,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이미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이번 개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안내는 질병 발생 이전에 미리 지정하라는 것이었고, 그 뒤에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이다.
- 적용 대상 확대는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적혔다. 보도에 따르면 2026 년 하반기 중 순차 적용이다. 다만 어느 상품까지 포함되는지와 회사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보험증권과 보험회사 앱 또는 콜센터에서 대리청구인이 지정돼 있는지 계약별로 확인한다.
- 지정돼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지정 신청 서류를 요청해, 성명 등 기본정보만으로 접수되는지와 무기명 방식을 쓸 수 있는 계약인지 확인한다.
- 가족 중 치매나 중증 질병 진단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정이 아직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다.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 절차를 알아본다.

금융회사

-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를 계약 유지 안내에 함께 표시하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안내를 개별 통지로 남긴다. 지정 신청에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마다 다르게 두지 않는다.

당국

- 무기명 대리청구인의 청구 단계 확인 절차를 공개하고,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사이의 적용 차이를 줄일 방법을 함께 정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적용 대상 확대에 어느 상품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미 맺은 계약에 새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 6 월 30 일 발표 자료에 적힌 것은 확대한다는 것과 기존 계약자에게 안내한다는 것까지다.

A 로 가면 · 기존 계약에도 신청만으로 무기명 방식을 쓸 수 있게 되면, 이미 치매보험에 든 사람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B 로 가면 ·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면, 2026 년 7 월 1 일 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종전의 기명 지정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한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보험회사가 기존 계약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무기명 방식의 신청 절차가 들어 있는지, 안내 문구만 적혀 있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성년후견과 금융거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란	편
	약관과 약관규제법 공동명의와 대리인
금융상품	간병·치매보험 CI 보험 생보 암보험 치매안심신탁
금융사건	치매보험 380 만 건, 대리청구인은 6%였다 210 만건이 팔린 보험, '중대한' 경우만 지급된다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 건 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
피해 구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기 무료로 도움받는 법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금융감독원이 2026 년 6 월 30 일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보험회사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하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는 점	1 차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 1 국 생명보험상품팀 2026.6.30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보험회사가 2026.7.1.부터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자에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 KDI 전재본의 부서 표기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 1 국 생명보험상품팀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기명 대리청구인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성명 등 기본정보만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최소화", "기본정보(성명 등)만 제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적용 대상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는 점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중전 제도의 문제로 발표 자료가 적은 것은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지정률이 낮다는 점이라는 것	1 차	금융감독원 2026.6.30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현행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정률이 낮아짐". 동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공동 서명·자필·방문 등)는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금융감독원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치매·중병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로 설명해 왔다는 점	1 차	금융감독원 2023.5.19 「금융꿀팁 200 선」 142 회 원문 전재. 원문 문구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 같은 자료는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 발생 이전) 본인을 대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었다. 다만 지정 행위가 본인의 의사표시로만 가능하다는 배타성은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본문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8742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	1 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Where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consent is obtained from a data subject"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2389&cseq=2199742
개인정보 보호법 제 22 조 제 1 항 —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where each matter requiring consent is distinctly presented, and obtain his or her consent thereto"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2389&cseq=2199750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1 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obtains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part from the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other personal information"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2389&cseq=2199754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의 2 제 1 항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다	1 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not process any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2389&cseq=2199755
민법 제 9 조 제 1 항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 차	민법 제 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capacity to manage affairs due to mental restraints". 다만 KLRI 영문본은 청구권자를 "relatives within the first degree"로 옮겨 놓았다. 현행 한글 조문의 "4촌 이내의 친족"과 어긋나는 번역이며, 같은 법 제 12 조 영문본은 "first cousin or closer relative"로 옮겼다. 본문은 한글 조문에 따랐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222&cseq=1708751
민법 제 12 조 제 1 항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같은 청구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 차	민법 제 12 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lack sufficient capacity" 및 "Article 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222&cseq=1708754
민법 제 938 조 제 1 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1 차	민법 제 938 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A guardian shall becom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ward"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222&cseq=1709826
보험업법 제 127 조의 2 제 1 항 —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같은 법 제 128 조의 3 과 제 129 조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	보험업법 제 127 조의 2(기초서류 변경 권고)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문구 "violates Articles 128-3 and 12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commend amendments to the basic documents"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379&cseq=1985897
금융감독원이 2019년 7월 2일 치매보험 약관 개선을 발표하면서 개선된 상품이 2019년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적은 점	1 차	금융감독원 2019.7.2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원문 전재. 약관 변경권고 2019년 7월, 개선 상품 판매 2019년 10월로 적혀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0159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서 치매 유병률이 2016년 9.50% 대비 0.25%p 감소했고, 2025년 예측 유병률은 9.17%, 예측 환자 수는 97만 명이라는 점	1 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2025.3.1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원문 전재. 이전재본에 직접 적힌 수치는 9.50%(2016), 0.25%p 감소, 22.25%(경도인지장애), 9.17%·97만 명(2025 예측), 45.8%다. 9.25%라는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표기와 "65 세 이상"이라는 문구는 이 전제본에 없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204
2023 년 치매 유병률 9.25%	파생	위 1 차 자료의 9.50%(2016)에서 감소폭 0.25%p 를 뺀 값. $9.50 - 0.25 = 9.25$. KDI 전제본에 9.25 라는 표기가 직접 적혀 있지 않아 파생으로 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2026 년 7 월 3 일 기준 신청 118 건, 서비스 계약 체결 4 건, 후견인 선임 절차 진행 14 명	1 차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026.7.8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원문 전재. 문의 1,271 건(545 명)·신청 118 건· 심층상담 34 건·계약 4 건·후견인 선임 절차 14 명으로 적혀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894
금융위원회가 2023 년 6 월 5 일 성년후견인이 은행 방문 시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힌 점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3.6.5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원문 전재. 원문 문구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9381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 년 26.0% 에서 2026 년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는 점	2 차	머니투데이 2026.6.29 보도. 원문 문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 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 아주경제 2026.6.29 보도(https://www.ajunews.com/view/20260629102820405)도 같은 수치를 적었다. 본문에 "머니투데이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www.mt.co.kr/finance/2026/06/29/2026062910461524792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니라 계약자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	2 차	아주경제 2026.6.29 보도. 원문 문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계좌로 지급된다". 본문에 보도임을 명시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629102820405
적용 대상 확대가 2026 년 하반기 중 순차 적용이라는 점	2 차	SR 타임스 2026.6.29 보도 "올 하반기부터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아주경제 2026.6.29 보도(https://www.ajunews.com/view/20260629102820405)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적었다. 본문 04 절에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83
치매보험 계약 100 건 가운데 76.9 건에는 대리청구인이 지정돼 있지 않다	파생	지정률 23.1%(머니투데이·아주경제 보도)를 100 에서 뺀 값. $100 - 23.1 = 76.9$. 보도된 비율을 건수로 환산한 산술 예시이며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보도는 지정률의 모수를 밝히지 않았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600 자	23 건	18 건 (78%)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무기명 대리청구인의 청구 단계 확인 절차가 공개됐는가. 기존 계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에 신청 절차가 포함됐는가.
적용 대상이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실제로 확대됐는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3.1%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